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2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1일

발 의 자: 박영한,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중화, 박춘선, 소영철,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민석, 이병운,
이봉준, 이새날, 이은림,
이종배, 이효원, 장태용,
최호정, 허 훈, 황철규
의원(33명)

1. 제안이유

- 서울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명칭 및 용어 개정(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나. 조례 목적 개정(안 제1조)
- 다. 도심부를 정의 함(안 제2조제2호 신설)
- 라.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3조 신설)

- 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 지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신설)
- 바.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분야별 계획 중 녹지를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2항제3호)
- 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대하여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3항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도심”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도심부”라 함은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통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역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서울도심의 보전·관리·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서울도심 변화 분석 및 진단
2. 서울도심 관리의 기본 방향
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환경, 녹지 등 분야별 계획
4. 공간관리계획
5. 지역별 관리 지침
6. 집행 계획
7.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3.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그 밖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 ④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역사도심”을 각각 “서울도심”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5조)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제3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라.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 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13항 중 “역사도심내”를 “서울도심내”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 800퍼센트)
-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단, 서울도심 : 600퍼센트)
-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제68조의2제4호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한양도성 역사도심의 역사문화 복원 및 건축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기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u>서울도심</u>"----- ----- ----- -----.</p>
<p><신 설></p> <p>2. (생 략)</p> <p><신 설></p>	<p>2. "<u>도심부</u>"라 함은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통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역을 말한다.</p> <p>3. (현행 2호와 같음)</p>
	<p>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신 설></p>	<p>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p>

제3조(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도심의 보전·관리·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하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심 변화 분석 및 진단
2. 역사도심 관리의 기본 방향
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환경 등 분야별 계획
4. ~ 7.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3. ~ 5.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의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서울도심의-----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이라 한다)」-----
-----.

② ----- 서울도심 -----

-----.

1. 서울도심 -----
2. 서울도심 -----
3. ----- 환경, 녹지 -----

4. ~ 7. (현행과 같음)

③ -----

-----, 서울도심 -----
-----.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 3 ~ 5. (현행과 같음)

④ ----- 서울도심 -----

-----.

⑤ ----- 서울도심 -----

-----.

⑥ ----- 서울도심 -----

-----.

⑦ 시장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

제4조(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략)
2.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중·저층 건축물 위주의 소단위형 정비사업
3. 4. (생략)

제5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제4조의 역사도심 기본계획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재원의 확보)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 서울도심 -----

-----.

제6조(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 서울도심

-----.

1. (현행과 같음)
2. 서울도심 -----

3. 4. (현행과 같음)

제7조(시책 반영) -----
----- 서울도심 -----
-----.

제8조(재원의 확보) 서울도심 -----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 목적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대하여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3항제2호)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